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또는 자금대출의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장이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가구정보,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의 가구정보,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가구정보 및 수도 사용량 변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 중 “서민금융진흥원”을 “서민금융진흥원의(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로, “사람”을 “사람, 및 그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장이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장: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5조제1항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불

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추심자의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자

별표 2 제5호더목을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수도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가정용(가정용과 다른 용도로 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연 락 처	(044) 202 - 3144